



연체 임차료 지원

집세가 연체되어 쫓겨날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연체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사회복지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도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.
- 수혜 자격은 소득과 재산에 의해 결정됩니다.
- 지원금은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.
- 지원금은 나중에 상환해야 합니다.

어떤 사람이 연체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?

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체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.

- 집세가 연체된 경우
-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우려가 있을 때
- 연체 집세를 낸 후에는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을 때. 예:

- 임차 계약 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가는 시점이 아님
- 집세를 낼 능력이 있음

- 임차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(또는 가정폭력법 명령에 따른 세입자일 경우)

또 다음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.

- 16 세 이상
-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고,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거주할 의향이 있음
-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

- 뉴질랜드 시민권자
- 2 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
- 구직수당과 같은 주된 사회복지수당을 받고 있음

또한 소득과 재산에 의해 수혜 자격이 결정됩니다.

지원 금액

지원금 액수는 미납된 집세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\$4,000 이며 나중에 상환해야 합니다.

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, 이 지원금은 12 개월 중에 1 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.

연체 임차료 지원 신청이 승인되면 저희는 연체 집세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.

신청방법

- 전화 0800 559 009
- 뉴질랜드 노후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화 0800 552 002
- 학생수당이나 학자금 용자를 받는 경우에는 StudyLink 전화 0800 88 99 00

귀하가 처한 상황을 듣고 지원금 신청을 위한 면담 약속을 잡아드리겠습니다.

자세한 정보

www.workandincome.govt.nz/rentarrears